[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A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민법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무권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본인 :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
* 외관 : 보기에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겉모습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

26.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무권대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③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④ 민법에서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⑤ 대리제도에서 계약의 법률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26③ 추인의 뜻·효과만 제시 → 절차는 없음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권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③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만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⑤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생긴다.

27⑤ '있는 것 같은 외관'만 생김.
기본대리권 = 실제로 가진 권한

26-⑤ 29-④ 26-① 29-⑤ 27-① 28-① 30-①~⑤ 28-②⑤ 26-④ 26-② 28-③ 29-④ 26-② 28-⑤ 27-④ 27-⑤ 27-⑤ 29-② 29-⑤ 27-② 29-③ 27-③ 29-①

밑줄 옆 26-① = 26번 ① 선지의 근거
같은 구절은 문제 색상별로 나란히 표시

정답·해설 대조 | 26③ · 27⑤ · 28⑤ · 29① · 30①

2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④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① 제도를 두는 이유. ㉠의 이유는 아님.

② 본인 →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③ 상대방의 책임 → 본인의 책임

④ '이익을 얻는다'는 근거 없음

⑤ 알고 있었거나 부주의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갑'은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모두 제출하여 3천만 원을 빌린 후, 2천만 원을 '갑'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하였다. ○○은행은 '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사례 2] '병'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에 사망하였다. 이후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사례1] 권한: 2천만 / 실제 차용: 3천만
필요한 서류 구비 → 29②의 판단 근거

→ 상대방(은행)의 책임 X

[사례2] 본인 사망 → 대리권 소멸

→ 상대방(무)의 책임 X

① [사례 1]에서 ○○은행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은행에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② [사례 1]에서 ○○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정'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사례 1]에서 '을'의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① 2천만 원만 × → 3천만 원 전액
추인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와 같은 효과

③ 소멸 전 거래 경험: 선지에서 추가한 조건

④ 계약 유효 → 대금 지급·소유권 청구

⑤ 사례1: 권한 초과 / 사례2: 권한 소멸

3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품질이 떨어졌다.
② 겨울에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고생했겠다.
③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④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진다.
⑤ 식당은 본관과 조금 떨어져 있는 별관에 있다.

본문 ⓐ: 신뢰도의 수준이 낮아지다

① 수준이 낮아지다
② 병이 없어지다
③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
④ 어떤 상태에 빠지다
⑤ 일정한 거리를 두다

정답·해설 대조 | 26③ · 27⑤ · 28⑤ · 29① · 30①